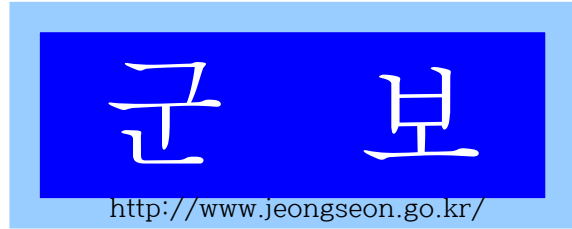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8호 2018. 1. 24.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 - 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4
- 정선군 공고 제2018 - 73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3
- 정선군 공고 제2018 - 94호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5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 - 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정 선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1. 12. ~ 2. 1.
3. 의견제출 기간 : 2018. 1. 12. ~ 2. 1.
4.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합 계	1개소					
월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80-2번지 일원	26,555	고립 위험	가	월탄잠수교는 여유고 및 경간 장 부족으로 상습적인 침수 및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하천범 람 등 인명피해와 주민 고립위 험성이 높은 시설임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월탄	2019년 이후	6,832 (시설비 6,332, 기타 500)	교량 개축 L=150m 제방 축제 1식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전 화 : 033) 560-2496

· 팩 스 : 033) 560-259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1부(별첨)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공 고 명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월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18 년 1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8 - 73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법제처 자치법규(조례) 지적사항 정비
 - 기획감사실-8746(2017.08.16.)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현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일부개정]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명, 안 제1조~제3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5조~제28조 및 안 제35조
- 상위법령 중복(재)규정 삭제
 - 안 제30조
- 용어 일제 정비(수정)
 -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23조~제24조 및 안 제32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일제 정비(수정)
 - 별표 1~2 및 별지 제1호~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6131)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60-2352 / 팩스 : 033-560-2594
- 메일 : jjss2@korea.kr
- 의견제출서 : 붙임1

4. 참고사항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2
- 관계법령 발췌 : 붙임3
- 법제처 자치법규(조례) 문제점 지적사항 : 붙임4

붙임2**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조례 제2332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공동처리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본문 및 제6호의 “법률”을 모두 “법”으로 하고,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폐수종말처리장”을 “처리시설”로 “법률”을 “법”으로 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제명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률”로 하고, 제1호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7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비용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24조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비용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표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예미농공단지</u> <u>폐수종말처리설 운영 및</u> <u>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48조의2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장)”란 <u>폐수종말처리시설</u>(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u>공동처리구역</u>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2. ~ 6. (생략) 제3조(처리구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u>공동처리 구역</u>	<u>정선군 예미농공단지</u> <u>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u> <u>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물환경보전법</u>」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 <u>공공폐수처리시설</u>----- -- <u>공공폐수처리구역</u>(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처리구역) ----- -----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u>처리구역</u>-----.

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생 략)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처리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u>법률</u> 제48조제1항 각 호 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 ----- ----- ---- <u>법</u>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11조 (생 략)	제5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u>법률</u> 제12조제3항 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 도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u>배 출기준</u> 에 따른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u>법</u> ----- ----- ----- ----- ----- ----- <u>배출</u> <u>허용기준</u> -----.
제1호~ 제5호 (생 략)	제1호~ 제5호 (현행과 같음)
6. <u>법률</u>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6. <u>법</u> ----- ----- -----
제13조(배출허용기준) 폐수 등 배 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 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인 경우 <u>폐수종말처리장</u> 유입수질	제13조(배출허용기준) ----- ----- ----- <u>처리시설</u> -----

은 설계기준(별표 1)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생략)

제15조 ~ 제21조 (생략)

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

법----- 배출허용기준 -----.

제14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

-----관
계 법률-----.

2. ----- 배출허용기준-----

2.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23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부담금의 추정)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 ② (생략)

- 제28조에 따른 가산금 -----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
---- 부담금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추정) -----
----- 배출허용기준 -----

-----.

제25조(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u>가산금 및 증가산금</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제26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u> <u>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u>	③ ----- ----- ----- ----- ----- <u>가산금</u> ----- -----. <u><삭 제></u>
<u>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u> <u>제27조(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u>	<u><삭 제></u> <u><삭 제></u>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1조 (생 략)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생 략)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제28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
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3조 ~ 제34조 (생 략)

제3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관련 사항의 검토

2. ~ 3. (생 략)

제36조 (생 략)

----- 부
담금-----

--.

제33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능) -----
-----.

1. 처리시설 -----

2. ~ 3. (현행과 같음)

제36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질
(제13조 관련)

제13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g/L)

수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450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350	
부유물질량 (SS)	350	
총질소 (T-N)	60	
총 인 (T-P)	10	

[별표 2]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제15조 관련)

제15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부담기준 : 부지면적과 오·폐수 배출량의 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 2) 산출근거

$$\bigcirc AS = 0.2M \frac{KI}{KT} + 0.8 M \frac{QOI}{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 입주업체 부지면적

- QOT : 총 오·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폐수 : BOD + COD

$$\frac{\text{—————}}{2} + SS$$

· 오수 : BOD + 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 부하량

· 폐수 : BOD + COD

$$\frac{\text{—————}}{2} + SS$$

· 오수 : BOD + SS

* 협의에 따라 폐수배출업체는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협의에 따라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업체는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m ²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 수 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 수 필 통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부 담 근 거				영수일자		영수일자			
수 량	B O D	C O D	S S						
m ³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정 선 군 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정 선 군 수 귀하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 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 첨부서류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사유 1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일 일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붙임3**관계법령 발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

- 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전문개정 2013.7.30.]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6.1.2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6.1.27.]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

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 환경부고시 제2014-2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정선예미농공단지)

[시행 2014.2.14.] [환경부고시 제2014-22호, 2014.2.14., 제정]

환경부(수질관리과), 044-201-7063

정선예미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정선예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강원도 정선군)	BOD	450
	COD	350
	SS	350
	T-N	60
	T-P	10

부칙 <제2014-22호, 2014.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법제처 자치법규(조례) 문제점 지적사항

강원 정선군 조례 정비과제 발굴 목록(조례 제명 가나다순)

	발굴 유형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 위반(위임법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3.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4.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5. 기타	
--	---	--

연번	발굴연번	지자체	조례제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유형
8	257	정선군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전체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조례의 내용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 1. 27.)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개정됨	조례 전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수정	5
9	258	정선군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2항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서는 채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가산금은 연체금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증가산금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해당조항 삭제 검토	5
10	259	정선군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8조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제2항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제2항"으로 수정	5
11	260	정선군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0조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법률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해야 함	해당 규정 삭제 검토	4

정선군 공고 제2018 - 94호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신기술, 특허 및 특정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의 적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전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규명 변경 :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기술 등 자문심의 대상 추가 : 순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을 적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안 제5조)
-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전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전화 : 033-560-2485, FAX : 560-2099, E-mail : khs04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규명을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각 조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설계 등 자문요청)”을 “(기술 등 자문·심의요청)”으로 하고, 제1항 중 “자문을”을 “자문·심의를”로 “설계자문 요청서”를 “기술심의·자문 요청서”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 공법 등의 적용사유
2. 특정 공법 등의 기술제안서
3. 특정 공법 등의 비교표
4. 기타 특정 공법 등의 자문·심의상 필요한 자료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설계 등 심의 대상)”을 “(기술 등 심의 대상)”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공사 용역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 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을 적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제1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 “(설계 등 의견청취)”를 “(기술 등 의견청취)”로 하고 제1항의 “제16조제1항”을 “제9조”로 하고, 제4항의 “별지 3호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전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로관리담당”을 “토목담당”으로 “도로관리업무 주무관”을 “토목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조문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를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 기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조문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서식 제3호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u>			<u>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u>건설기술 관리법</u> 」 제5조의2 및 「 <u>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u> 」 제21조에 따라 <u>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u>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건설기술 진흥법</u> 」 제6조 -- 「 <u>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u> 」 제19조----- <u>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u> ----- ----- -----.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u>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u>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u> ----- -----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방재과장</u> 이 된다.		② ----- -- <u>안전건설과장</u> ----.		
③.~⑦. (생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심의하고, 제7조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 「 <u>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u> 」----- ---제19조제2항----- ----- 제19조제4항-----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조(설계 등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8.(생략)

②.(생략)

(신설)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등자문심의요청) ① 자문·심의를-----

----- 기술심의·자문 요청서

---.

1. ~ 8.(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의 자문 및 심의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 공법 등의 적용사유

2. 특정 공법 등의 기술제안서

3. 특정 공법 등의 비교표

4. 기타 특정 공법 등의 자문·심의상 필요한 자료

④ -----

-----.

제5조(설계 등 심의 대상) 자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 5.(생략)

(신설)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설계 등 자문 대상)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지방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

제5조(기술 등 심의 대상) -----

--.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공사 용역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 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등 특정 공법 등을 적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

제6조(기술 등 자문 대상) -----

제 19 조 제 2 항 -----
-----.

1. ~ 4.(현행과 같음)

② -----

-----.

1. 「건설기술진흥법」

2. ~ 5.(생 략)	2. ~ 5.(현행과 같음)
제7조(설계 등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u>건설기술관리법</u>」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술 등 의견청취) ① ---- ----- ----- ----- -----「<u>건설 기술 진 흥 법</u>」 제 9 조 ----- ----- ----- -----.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u>별지 제3호서식</u>의 설계사전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별지 제4호서식</u>----- -----.
제9조(회의) ①(생 략) ②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만, 경미하거</u>

③. (생 략)	<u>나 긴급한 안전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u>별지 제4호서식</u>의 설계자문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 <u>별지 제5호서식</u> ----- -----.
제10조(간사 등) ①(생 략)	제10조(간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도로관리담당</u>이 되고 서기는 <u>도로관리업무 주무관</u>이 된다.	② ----- <u>토목담당</u>----- ----- <u>토목업무 주무관</u>----- .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u>별지 제5호서식</u>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u>별지 제6호서식</u>의 설계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 의 록) ----- ----- <u>별지 제6호서식</u>----- ----- ----- <u>별지 제7호서식</u>----- -----.
제1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1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u>심의기피</u>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 ----- ----- <u>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 기피신청서</u>를 ----- 제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문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 18 조 (자 문 수 당 등) ----- -----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설계심의·자문요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심의·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사개요:
3. 공사위치:
4. 소요공사비:
5. 착공예정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6. 설계상특기사항: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요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사개요:
3. 공사위치:
4. 소요 공사비:
5. 당초 설계금액:
변경 설계금액: (증.감)
6. 착공 연월일:
7. 준공예정 연월일:
8. 계약업체명:
9. 변경사항:

-----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심의·자문요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심의·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사개요:
3. 공사위치:
4. 소요공사비:
5. 착공예정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6. 설계상특기사항: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요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사개요:
3. 공사위치:
4. 소요 공사비:
5. 당초 설계금액:
변경 설계금액: (증.감)
6. 착공 연월일:
7. 준공예정 연월일:
8. 계약업체명:
9. 변경사항:

10. 변경사유: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신 설)

10. 변경사유: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 (제4조제3항 관련)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공법 등의 심의·자문을 요청합니다.

①용역명 또는 공사명		②용역사 또는 관련업자	
③특정공법 등 적용위치			
④용역 또는 공사기간		⑤책임기술자 등	
⑥설계금액 또는 공사금액		⑦특정 공법 대상 공사비	
⑧담당자 및 메일주소		⑨발주방법	
⑩공사개요			
⑪특정 공법 등 적용분야 공사개요			
⑫특정 공법 등 심의안건 요약			
⑬붙임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작성방법 : ① ‘용역명 또는 공사명’ 란은 설계의 경우 용역명을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용역사 또는 관련업자’ 란은 설계의 경우 용역사를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을 기재한다.

③ ‘특정 공법 등 적용위치’ 란은 특정 공법 등을 적용하여 공사하는 위치를 기재한다.

④ ‘용역 또는 공사기간’ 란은 설계의 경우 용역기간을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⑤ ‘책임기술자 등’ 란은 용역의 경우 책임기술자를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현장대리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기재한다.

⑥ ‘설계금액 또는 공사금액’ 란은 설계의 경우 전체 설계비를 기재하고, 공사중에 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비를 기재한다.

⑦ ‘특정 공법 대상 공사비’ 란은 특정 공법 등 적용대상 공사비를 기재한다.

⑧ ‘담당자 및 메일주소’ 란은 심의요청 담당자와 공직자통합메일(@korea.kr)을 기재한다.

- ⑨ ‘발주 방법’ 란은 관급 또는 사급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⑩ ‘공사 개요’ 란은 전체의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를 기재한다.
 ⑪ ‘특정 공법 등 적용분야 공사 개요’ 란은 특정 공법 등 적용분야의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를 기재한다.
 ⑫ ‘특정 공법 등 심의 안전 요약’ 란은 특정 공법 등 심의 안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⑬ ‘붙임’ 란은 특정 공법 등 심의 자료 및 관련자료 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설계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제7조제4항 관련)

공 사 명	
검토내용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 사전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설계 심의·자문위원회 의결서 (제9조 관련)

의안번호: -

1. 의 안 명:
2. 방 법:
3. 일시 및 장소:
4. 참여인원:
4. 의결사항
 - 상기 의안을(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 하는 것으로 의결함.

[별지 제4호서식]

설계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제7조제4항 관련)

공 사 명	
검토내용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 사전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술 심의·자문위원회 의결서 (제9조 관련)

의안번호: -

1. 의 안 명:
2. 방 법:
3. 일시 및 장소:
4. 참여인원:
4. 의결사항
 - 상기 의안을(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 하는 것으로 의결함.

공 사 명		의안번호		요청부서	
접수일자		회의일시		완결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회공사비	
자문 방법	심의() 의견청취 [사전기술검토(), 기타()]				
자 문 자					
자문 결과					
특기사항					
비 고					

공 사 명		의안번호		요청부서	
접수일자		회의일시		완결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회공사비	
자문 방법	심의() 의견청취 [사전기술검토(), 기타()]				
자 문 자					
자문 결과					
특기사항					
비 고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기술자문위원 기피신청서

☐ 안전명 : 00 건설공사 기술자문

【위원이 기피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

본인은 위 자문안전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설)

신청인 : 기술자문위원 (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 안 건 명 :

본인은 위 안건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자문할 것을 서약하며 주요 보안사항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술자문위원 (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

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